

별첨 4 (연대보증인)

대부보증 표준약관

표준약관 제10061호 (2014. 9. 19. 개정)

대부업자는 채무자, 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

★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.

★ 특히,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"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"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 (별지 "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"참조)

대부업자

상호 또는 성명 주식회사 워핀딩대부
 대부업 등록번호 2018-대부업-1358
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0 1502호
 전화번호 02-508-7006

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

성 명 주식회사 [redacted] 건설
 등록번호 [redacted]
 주 소 인천광역시 [redacted]

보증인(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채무자가 상기 대부업자(이하 "대부업자"라 한다)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(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),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,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.

제1조(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)

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.

채무자	성명 : 정 [redacted] 주소 : 인천광역시 [redacted]
거래약정	[2018년 8월 20일이자] 대출약정서
채무금액	금 [오억]원
상환기일	첫 대출실행일로부터 [8]개월
이자율	연 17%

